

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
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2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01호로 2023년 2월 9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,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개정(안 제 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종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개정(안 제7조 ~ 제9조)
- 라. 처우개선위원회 설치·대행 신설(안 제10조)
- 마.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, 표창 및 포상 개정(안 제11조~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’으로 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법 제3조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

- 법·부당 행위 등을 신고 후 신고행위로 인해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과 더불어 표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한편 낮은 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‘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’에서 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’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,
-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,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으로, 상위 법령에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
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2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03호로 2023년 2월 9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,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관계기관 등,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
-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조사·연구, 복지·교육·문화지원, 상담 및 자립지원,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, 교육,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,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아동복지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이념)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,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.

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.

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
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

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)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